

성희롱

없는

안전 일터



우리 소중한 직원을
존중해주세요!

변화의 중심 기회의

경기

**사업주는
소속 직원에 대한
고객의 성희롱을
방지하고 사건 발생시
적절한 조치를
해야 합니다.**

(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4조의2)

고용노동부 상담

1551-9811

경기도 상담

031-8008-2366

변화의 중심 기회의

